

등록번호	안전치수과-19595
등록일자	2015. 10. 5.
결재일자	2015. 10. 6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재난관리팀장	안전치수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안기민	조용기	이명균	조인동	10/06 문석진
협 조	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팀장 주무관	임근래 이창조 김오녀		

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·
운영에 관한 조례』 전부개정 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	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	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	규제신설없음 원안동의 원안동의	

서 대 문 구
안전치수과

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』 전부개정 계획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대문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 보호, 안전관리 등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

I

입법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, 제2조

II

추진배경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
-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 보호
- 재난의 예방·대비·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

III

주요내용

- 제명변경 및 조문정리
 - 제명변경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조례 ⇒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
 - 장 신설, 보완 등으로 조문 체계정리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책무 등 규정(안 제1조~제5조)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설치
 -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·기능, 구성, 운영규정(안 제6조~제9조)
 -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, 구성, 운영규정(안 제10조)
 -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·기능, 구성, 운영규정(안 제16조~제17조)
 - 대책본부회의, 상황판단회의 규정(안 제18조~제19조)
 - 파견근무자의 요청, 교육, 임무 규정등(안 제20조~제22조)
 - 동원체계의 구축 등(안 제25조)
 - 재난안전상황실 설치, 기능(안 제26조~제27조)
 - 안전관리자문단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규정(안 제28조~제32조)
- 재난예방 및 대비
 - 재난예방조치, 안전점검, 안전조치 규정(안 제33조~제34조)
 - 재난예보·경보체계구축, 종합계획수립(안 제35조)
 -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·운용(안 제37조)
 - 재난대비훈련(안 제39조)
- 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규정(안 제40조~제43조)
-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
 - 안전관리계획의 수립(안 제44조)
 -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(안 제45조)
 - 안전문화활동의 육성·지원(안 제46조)
 - 안전교육 및 수당 등(안 제47조~제48조)

IV

추진일정

- 관련부서 사전협의 : 2015. 7. 27. ~ 2015. 8. 5.
- 법제심사 : 2015. 8. 25. ~ 2015. 10. 2.
- 입법예고 : 2015. 10. 7. ~ 2015. 10. 27.
- 조례·규칙심의회 의결 : 2015년 10월중

- 서대문구의회 상정 : 2015년 11월중
- 공포·시행 : 2015년 12월~2016년 1월

첨 부 : 1.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. 끝.